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송파 제5선거구,

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유정인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
필요하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는
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
조례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
대상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즉 현재 시공사 선정요건은 ‘출석 조합원’ 이 아닌 ‘전체 조합원’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있는데, 현실적으로 단독 건설사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기는 불가능에 가까워, 해당 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장에 지연과 혼란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에 시공사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하여 공공지원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시공사 선정 시기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